

# 남양주 궁집 시민개방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

(박은경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572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11. 13.

발의자 : 박은경, 한근수, 이정애,  
정현미, 원주영, 김동훈,  
김상수, 이경숙, 손정자

## 1. 제안 이유

국가민속문화유산 제130호로 지정된 남양주 궁집의 역사·문화자원을 보존하고 문화, 경관자원을 개방·활용함으로써 문화예술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

## 2. 주요 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, 용어의 정의를 규정(안 제1조~제2조)
- 나. 기본이념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(안 제3조~제4조)
- 다. 기본계획 수립 및 시민개방에 관한 내용을 규정(안 제5조~제6조)
- 라. 시설 운영 및 위탁, 지도감독, 사용허가 제한 등을 규정  
(안 제7조~제9조)

## 3. 제정조례안 : 덧붙임

4. 예산수반사항 : 덧붙임

5. 관련법령 :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

## 남양주 궁집 시민개방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국가민속문화유산 제130호로 지정된 남양주 궁집의 역사·문화자원을 보존하고 문화, 경관자원을 개방·활용함으로써 문화예술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남양주 궁집”이란 국가민속문화유산 제130호에 지정된 문화유산과 평내로 9 일원의 고택과 조경 등을 말한다.
2. “고택”이란 남양주 궁집 내의 무교동집, 군산집, 다실, 용인집, 초가 등 한옥고택을 말한다.

제3조(기본이념) ① 국가민속문화유산 제130호로 지정된 남양주 궁집은 문화유산으로 보존과 관리를 원칙으로 한다.

② 주변 고택은 전통문화, 융복합 문화예술, 시민 참여, 창의적인 문화예술 공간으로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를 최대한 존중하도록 한다.

③ 남양주 궁집은 문화유산의 계승과 발전 및 활용·활성화를 위한 개방적인 공간으로 시민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.

제4조(시장의 책무) ① 남양주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남양주 궁집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지키고 전통문화를 전승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·조사 및 기록유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.

② 시장은 남양주 궁집의 자원을 활용하고 개방하는 등 시민 참여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.

제5조(기본계획의 수립) ① 시장은 남양주 궁집의 보존과 관리, 개방과 활성화를 위하여 남양주 궁집 활용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할 수 있다.
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.

1. 남양주 궁집의 효율적인 경관 조성 및 보호 관리에 관한 사항
2. 문화유산 및 문화예술 전시, 공연에 관한 사항
3. 전통문화체험과 교육에 관한 사항
4. 남양주 궁집 주변환경 개선을 위한 사항
5. 시민주도 생활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6조(시민개방) 남양주 궁집은 시민개방을 원칙으로 한다.

제7조(시설 운영 및 위탁 등) ① 시장은 남양주 궁집 내 문화유산 시설을 직접 운영한다.

② 시장은 문화유산 원형 보존과 활용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 고택의 일부를 전통문화 계승 발전에 적합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위탁의 방법·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「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
제8조(지도감독)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 정기 또는 수시

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 운영자의 시설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, 수탁 운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.

제9조(사용허가 제한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시설의 사용이나 위탁관리를 제한할 수 있다.

1.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
2. 문화유산 보존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
3.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
4.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 1. 재정수반요인

가. 자치법규명

- 남양주 궁집 시민개방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

나. 재정 수반 요인

- 제5조(기본계획의 수립)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.

1. 남양주 궁집의 효율적인 경관 조성 및 보호 관리에 관한 사항
2. 문화유산 및 문화예술 전시, 공연에 관한 사항
3. 전통문화체험과 교육에 관한 사항
4. 남양주 궁집 주변환경 개선을 위한 사항
5. 시민주도 생활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2호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,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### 3. 미첨부 사유

- 조례 제정을 통해 남양주시 궁집의 기본계획 수립이 신설되는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업 추진계획 수립 전이므로 예상되는 비용 및 경비를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

### 4. 작성자

문화교육국 문화관광과장 이주연

☑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

제3조(문화유산보호의 기본원칙) 문화유산의 보존·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.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) ① 국가는 문화유산의 보존·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·추진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유산의 보존·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·추진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문화유산이나 문화유산의 보호물·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34조(관리단체에 의한 관리)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국가지정문화유산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그 문화유산을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국유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중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는 문화유산의 관리단체는 관할 특별자치시, 특별자치도 또는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가 된다. 다만, 문화유산이 2개 이상의 시·군·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·광역시·도(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)가 관리단체가 된다.

②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그 문화유산을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문화유산의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.

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라 관리단체를 지정할 경우에 그 문화유산의 소유자나 지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,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④ 국가유산청장이 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를 지정하면 지체 없이 그 취지를 관보에 고시하고,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해당 관리단체에 이를 알려야 한다.

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의 관리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⑥ 관리단체가 국가지정문화유산을 관리할 때 필요한 운영비 등 경비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해당 관리단체의 부담으로 하되, 관리단체가 부담능력이 없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.

⑦ 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 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.

제52조(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부담)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지 아니하는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·관리 및 활용 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.